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준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10 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 박준태・구자근・고동진

강대식 • 박충권 • 송언석

최수진 · 김장겸 · 김선교

주진우 · 김용태 · 최은석

박정하 · 김상욱 · 강선영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구조금을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어릴 때 이혼 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생부가 홀로 양육을 도맡았던 어머니와 동일 순위로 인정되어 유족구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은 사례가 발생한 바 불합리한 유족구조금의 지 급 기준을 정비해야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음.

이에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 하였는지에 따라 순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, 부양의무를 저버리거 나 피해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 심의회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 로써 진정으로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를 후순위로 하도록함(안 제18조제3항).
- 나. 유족이 구조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구조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때에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43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중 "한다"를 "하고,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를 후순위로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구조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.
- 1. 구조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(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 다)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- 2. 구조피해자에게 중대한 범죄행위(제4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 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족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433호 범죄피해자 법률 제2043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(유족의 범위 및 순위) ① 제18조(유족의 범위 및 순위) ① · ② (생 략)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유족 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 한 순서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 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,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 모를 후순위로 한다. -----하고, 구조피해자 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 로 하고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를 후순위로 한다. ④ (생략)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<신 설> 구조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 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

-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 정할 수 있다.
- 1. 구조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

 (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

 한정한다)를 중대하게 위반한

 경우
- 2. 구조피해자에게 중대한 범죄

 행위(제4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를 하거나 그 밖에 심기하다 대우를 한 경우